

『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』

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

상위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하고, 변화된 관련 법령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미비사항을 보완, 연구원 청렴도 및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I 개정이유

- 상위 조례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며 동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,
- 변경된 관련 법령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, 연구원 청렴도 및 시민고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II 주요내용

- ‘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’을 ‘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’으로 제명을 변경함.
-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항목이 관련법령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.(규칙안 제4조 제3호)
- ‘축산물 위생교육기관 등 지정’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위생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함.

- '국가표준 기본법' 제9조, 제10조와 '국제단위계(SI) 및 그 사용법'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한 단위 정정.
(단위정정 : $l \rightarrow L$, $ml \rightarrow mL$, $\mu l \rightarrow \mu L$)
- 연구원 연구역량 및 국제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 및 원가계산 세부근거 마련(규칙안 제8조, 제9조)
-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시험종 및 시료소요량 정비(규칙안 별표 1)
- 그 밖에 검사시험 항목의 일부 변동사항, 수수료 및 서식을 정비함(규칙안 별표 2)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함.

III 향후 추진일정

■ 추진절차

-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방침 수립 후 식품안전과(주관부서)에 개정 의뢰

■ 추진일정

- '11. 6월 :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기본방침 수립
- '11. 6월말 : 입법예고심사,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 의뢰
- '11. 7월 : 입법예고(20일)
- '11. 7월말 : 법제심사 의뢰
- '11. 8월 : 조례·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
- '11.10월 : 전부개정 조례 시행규칙 공포·시행

IV 행정사항

- 입법예고안 및 규제·입법 심사 의뢰, 부패영향평가의뢰, 입법예고, 법제심사 및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상정 의뢰 등(식품안전과)

- 붙임 : 1.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부.
2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